

#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 CONTENTS

## 목 차

요 약 / 3

---

I.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 4

---

II. 아시아 각 국별 임금현황 / 8

---

8	1. 베트남
11	2. 미얀마
13	3. 인도네시아
17	4. 싱가포르
19	5. 필리핀
21	6. 말레이시아
22	7. 태국
24	8. 라오스
26	9. 캄보디아
28	10. 인도
30	11. 방글라데시
32	12. 파키스탄
34	13. 스리랑카

III. 시사점 / 36

---

## 요 약

포스트 차이나의 주요 투자대상인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투자매력도가 최근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저하되고 있다. 설문결과 최근 1년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평균 14.8%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진출기업들이 각각 14.5%, 12.3%, 11.5%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아시아 13개국의 평균인상률은 10.6%에 달한다.

임금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정최저임금제 도입 및 법정최저임금 인상을 들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이 27~29%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고, 인도는 25.8%를 인상하였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태국은 올해 4월 최저임금을 40% 인상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수준이 50~60%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국은 노동자 임금을 높여서 노동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편으로 국민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제조업투자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있어서 임금인상의 충격이 큰 가운데 임금인상뿐 아니라 높은 이직률도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스리랑카의 평균 이직률은 13.6%로 나타났으며, 태국과 미얀마는 각각 13.1%, 11.3%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아시아 13개국의 평균 이직률은 8.9%에 달한다.

높은 이직률은 숙련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기업들은 각종 복지혜택제공을 통해 우수인력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평균 인건비의 11%를 사원복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무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기업들은 임금트렌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노무, 인사관리상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이미지 제고, 근무여건 개선 등 예방차원의 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I

##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 □ 최근 1년새 아시아 진출기업 10.6% 임금 인상

- 아시아 13개국 진출기업 371개사의 설문응답에 따르면, 우리 진출 기업들은 최근 1년 내 약 10.6%의 임금을 인상함
  - 베트남(14.8%), 미얀마(14.5%), 방글라데시(12.3%), 파키스탄(11.5%), 인도네시아(11.2%), 인도(11.1%)가 임금인상을 주도
  - 말레이시아(5.6%), 태국(5.6%), 필리핀(7.6%), 싱가포르(8.9%)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세계적인 HR전문기업인 Aon Hewitt은 2012년의 경우 인도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며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sup>1)</sup>

### □ 법정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아시아지역의 생산직임금 급등

- 아시아 각국의 법정최저임금제 도입은 일시적 임금 급등을 유발
  - 중국의 최저임금제 도입과 맞물려, 아시아 각 국도 법정최저임금제 도입에 적극적
  - 말레이시아는 2012년 상반기내 최저임금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노동자 최저임금은 500~600링깃(19만~22만원)선에서 800~900링깃(30만~33만원)선으로 50~60% 급상승할 전망
  - 태국은 2012년 4월 방콕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최저임금을 40% 인상
  - 인도네시아 일부주도 최저임금을 20% 이상
- 각 국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소득증대를 통해 노동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편으로 임금인상이 지출증대로 이어져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1) 인도 : 11.9%, 중국 : 9.5% 인상 전망

<국가별 법정 월 최저임금>

국 가	최저임금	비 고
말레이시아	265~298달러	- 법안 제정단계 -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50~60%인상
인도네시아	108달러	- 2011년 9.1% 인상
베트남	40달러 ~ 65달러	- 2011년 10월 27~29% 인상
캄보디아	66달러 <sup>2)</sup>	- 2011년 8.2% 인상
필리핀	238달러	- 2011년 5.4% 인상
라오스	81달러	- 2012년 20% 추가인상 예정
인도	150달러	- 2011년 25.8% 인상
방글라데시	65달러	- 2010년 11월, 77.7% 인상
파키스탄	82달러	- 2011년 16.7% 인상
스리랑카	68달러~86달러	
태 국	234달러	- 2012년 4월, 방콕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일일 법정최저임금이 215바트에서 300바트로 40% 인상됨
중국(베이징)	200달러	- 2012년 1월, 8.6% 인상
중국(선전)	238달러	- 2012년 4월, 14% 인상
중국(톈진)	208달러	- 2012년 4월, 13% 인상

주 : 1. 태국(중부), 인도, 필리핀은 월 24일 근무기준, 인도·스리랑카는 숙련공 기준  
2. 필리핀은 수도권 지역 기준이며 기타 지역은 평균 \$150 내외 수준

□ 중국의 인건비 인상 여파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 중국은 2011년 1분기에 13개 성시의 최저임금을 평균 20.6% 인상
  - 동부 연해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고 1,500위안(약 239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서부 내륙지역도 700위안(약 12만원)을 초과
  - 선전시는 2012년 4월 최저임금을 14% 올린 1,500위안(27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베이징시는 1,260위안, 톈진시는 1,310위안으로 각각 14%, 13% 인상됨
-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올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이 도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에 육박하도록 조정할 계획

2) 건강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의무 포함

- 임금상승요구와 동시에 노사분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2010년 7월 다렌개발구 일본공장 연쇄파업, 2011년 4월 상하이항 컨테이너 기사 파업 등 최근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빈번

## □ 높은 이직률과 구인난도 어려움

- 13개국 393개사의 응답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진출기업들의 평균 연 이직률은 8.9%임
  - 스리랑카(13.6%), 태국(13.1%), 미얀마(11.3%), 인도(10.6%)에서 비교적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며 캄보디아(5.2%), 파키스탄(5.5%), 필리핀(7.2%), 싱가포르(7.7%), 인도네시아(7.8%)는 상대적으로 안정
-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사원복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복지지출은 기숙사운영, 출퇴근버스, 직원식당운영, 경조사비지원, 정기직원포상, 직원복지기금운영 등으로 구성
- 우리 진출기업 385개사 응답결과 평균 인건비의 11%를 사원복지로 지출
  - 싱가포르(16.5%), 미얀마(13.5%), 말레이시아(12.3%)등에서 비교적 사원복지지출 비율이 높음

### <제조업위주의 아시아지역 진출>

- 아시아 지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진출이 활발
  - 전체 아시아 진출기업<sup>3)</sup>의 55%가 제조업이며, 50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비율이 전체의 44.5%
-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KOTRA, 2012)』에 따르면 우리의 전체 투자기업중 39%가 아시아대양주에 진출하여 중국 진출기업수(37%)보다 많음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상위 10대국 중, 6개국이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 소재
    -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3) 전체 아시아진출 조사대상 4,046개사 기준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가입비용도 증가

-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EPF(Employee's Provident Fund), Social Security Fund 등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임
- 싱가포르의 경우 월 급여의 16%, 베트남의 경우는 17%를 매월 고용주가 납입해야 하는 등 기업차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음

<아시아 각 국별 사회보장제도 납입규정(월급여 대비)>

국 가	고용주측	종업원측	소 계
베 트 남	17%	7%	24%
싱가포르 <sup>4)</sup>	16%	20%	36%
말레이시아	12%	11%	23%
태 국	5%	5%	10%
라 오 스	5%	4.5%	9.5%
인 도	12%	12%	24%
스리랑카	15%	8%	23%
필 리 핀	7%	3%	10%
중 국	20%	8%	28%

- 주 : 1. 태국, 인도, 필리핀은 월 24일 근무기준, 인도·스리랑카는 숙련공 기준  
 2. 스리랑카는 EPF와 ETP를 합산  
 3. 중국의 도시근로자 연금보험은 고용주측 20%, 종업원측 8% 납부가 일반적으로 기업부담률은 성·직할시·자치구 지방정부가 결정

4) 35세 미만 기준

## II

## 아시아 각 국별 임금현황

## 1. 베트남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베트남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12년 초 시행하려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3개월 앞당겨 2011년 10월부터 적용 -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 최저임금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37	259	476	239	519	913
고정수당	42	81	128	55	113	221
변동수당	63	104	100	42	69	65
퇴직적립금	30	35	64	30	63	116
기 타	17	57	70	49	67	126
<b>합 계</b>	<b>289</b>	<b>536</b>	<b>838</b>	<b>415</b>	<b>831</b>	<b>1,441</b>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95	부동산·임대업	150	농림어업	-
광업	-	건설업	112	영상·통신	100
도소매업	200	운수업	120	기타	100
금융보험업	250	숙박음식업	150		

자료원 : KOTRA 설문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제조업체 A사 (투자금액 2,100만 달러, Binh Phuoc성 소재)

- 한국인 직원 11명, 현지인 직원 1,800명 근무
- 2011년 10월 최저임금 인상조치에 따라 기본급여 31.8% 인상 (지난 1년간 인상률은 42%)
- 생산직 기본급여 92~144달러, 사무직 118~447달러 수준
- 고정수당 구성
  - . 통근수당 5%, 주택보조수당 5%, 유해수당 5%,
  - . 생산장려수당(1년이상 5%, 2년이상 10%, 3년이상 15%)

○ 제조업체 B사 (투자금액 640만 달러, 동나이 소재)

- 한국인 직원 60명(조선족 포함), 현지인 직원 70명 근무
- 2011년 10월 최저임금 인상조치에 따라 기본급여 15% 인상 (지난 1년간 인상률은 55%)
- 생산직 기본급여 100~200달러, 사무직 200~760달러 수준
- 고정수당 구성
  - . 직급수당, 통근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주택보조수당, 교대수당 등 기본급여의 약 16%를 고정수당으로 지급

□ 법정최저임금

○ 최근 3년간 법정최저임금의 변화 동향(외국 투자기업 기준)

구 분	2010		2011		2012	
	VND	USD	VND	USD	VND	USD
지역 I	800,000	44.2	980,000	50.3	1,350,000	64.9
지역 II	740,000	40.8	880,000	45.1	1,200,000	57.7
지역 III	690,000	38.1	810,000	41.5	1,050,000	50.4
지역 IV	650,000	35.9	730,000	37.4	830,000	39.9

자료원 : 노동법, 정부령 70호(70/2011/ND-CP)

주 : 1) 2011년 10월부터 베트남 기업과 외국기업 최저임금 통일

2) 지역 I은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영, 붕따우 시성의 중심 도시이며, II, III지역은 2,3선도시, IV지역은 도시외곽지역을 포함

## □ 물가 및 임금인상률

### ○ 최근 3년간의 물가 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6.88%	9.19%	18.58%
임금인상률	11.7%	12.8%	12.7%
최저 임금 인상률			
베트남 기업	12.3~22.5%	13.7~37.8%	48.1~68.8%
외국 기업	8.7~11.7%	10~15.7%	27.3~29.0%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주 : 2011년 10월부터 베트남 기업과 외국기업 최저임금 통일

## □ 사회보장제도

### ○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제도로 구성됨

구 분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2011	2012	2011	2012	
기업부담비율	16%	17%	2%	3%	1%
근로자 부담비율	6%	7%	1%	1.5%	1%

주 : 1. 보험 관련 최저임금은 정부령22호(ND22/2011)에 따라 현재 830,000동에서 2012년 5월1일부터 1,050,000동으로 인상예정

2.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자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의무가입

3. 실업보험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적용

##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물가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요구가 많으며, 인력부족난으로 임금인상이 급격하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동종 업체간 경쟁적 인상 및 경력사원의 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애로사항
  -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임금 인상폭만큼 제품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익 폭이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

## 2. 미얀마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미얀마의 개방·개혁이 가속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숙련공 등 근로자의 부족현상이 심화
  - 동종 업종(특히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간 인력 스카웃 경쟁 심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인금이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41	100	227	91	205	523
고정수당	30	52	166	40	94	129
변동수당	11	64	76	43	87	103
퇴직적립금	5	18	50	10	0	100
기 타	13	24	50	16	40	83
<b>합 계</b>	<b>100</b>	<b>258</b>	<b>569</b>	<b>200</b>	<b>426</b>	<b>938</b>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65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61	건설업	-	영상·통신	-
도소매업	60	운수업	150	기타	50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65		

자료원 : KOTRA 설문

### □ 법정최저임금 : 없음

□ 물가 및 임금인상률

- 최근 3년간의 물가 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2.2%	9.4%	8.0%
임금인상률	-	-	-

- 임금인상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가이드라인 유무 : 없음.

□ 사회보장제도 : 없음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고용관련 정보 확보의 어려움
-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주변 환경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임금 산정도 어려움
- 숙련직, 경력직 근무자의 절대 부족
- 개방·개혁에 따른 투자확대로 숙련공 부족현상 심화
  - 동종 업종 간 인력 스카웃 심화
  - 건설업계의 경우, 스카웃 시 기존 월급여에 100% 인상 (중견급 엔지니어의 경우 월급여 800~1000달러 선)
- 부대비용의 추가 발생
- 발전기 유지비용,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비용 등

### 3. 인도네시아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2011년 최저 임금이 전년도 99달러에서 9.1% 증가한 108달러로 인상
  - 지난 3년간의 임금상승률은 9.6%로 평균 물가상승률 5.3%를 상회
  - 설문 결과, 2012년 한국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1.2%에 달함
  - HR 컨설팅사인 EC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1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임금인상률이 높음
- 국가신용도 상향,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인상 지속
  - 2011년말 신용평가사 Fitch가 인도네시아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증가
  - 이 밖에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쳐 2012년도에도 임금 인상 속도가 가파를 전망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44	390	990	210	472	1,336
고정수당	31	83	171	49	130	220
변동수당	47	121	127	44	114	199
퇴직적립금	13	45	239	33	75	158
기 타	24	41	79	30	67	135
<b>합 계</b>	<b>259</b>	<b>680</b>	<b>1,606</b>	<b>366</b>	<b>858</b>	<b>2,048</b>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 IT 분야가 250달러로 가장 많은 최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설업(200달러), 광업(170달러), 제조업(89달러) 순임

[단위 : US\$]

업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제조업	89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170	건설업	200	영상·통신	-
도소매업	-	운수업	-	기타	250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		

자료원 : KOTRA 설문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의류 제조 기업 D사

- 한국 대기업 계열사로 1998년 진출하여 여성의류 제조공장 운영 중
- 직원은 한국인 20명, 인도네시아인 1,250 명으로 구성
- 자카르타 북부 KBN(Kawasan Berikat Nusantara)공단 입주
- 직원 이직률은 5% 미만으로 안정적인 편
- 경조사비 지급,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등을 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
- 주택구입시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 검토 중

<D사의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70	326	580	170	452	820
고정수당		65	100	56	85	200
변동수당		200	150		120	223
퇴직적립금	4	14	25	4	20	35
기타			10			10
합계	174	605	865	230	677	1,288

□ 법정최저임금

○ 지역별 최저 임금과 직종별 최저임금의 이중구조로 구성

- 지역별 임금결정에는 지자체장, 노동부, 노동자연합, 기업연합 등 관계자가 참여하며 지자체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

는 경우 변동 폭이 커짐

- 업종별 최저 임금의 결정에는 협회, 기업연합(Apindo), 지자체, 임금평의회(중앙부처, 학계, 노동자로 구성)등이 참가하며 대략 16~22% 정도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 임

- 2011년 인도네시아의 최저 임금은 전년도 99달러에서 9.1% 증가한 10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3년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9.6%

[단위 : US\$]

구 분	2009	2010	2011
법정최저임금	91	99	108
증가율	11%	8.8%	9.1%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임금 수준이 높은 자카르타 특별주(DKI Jakarta) 지역의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144달러로 전년에 비해 15.4% 증가

□ 물가상승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2.8%	6.9%	6.3%
임금인상률	11%	8.8%	9.1%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사회보장제도

- 산재, 사망, 노후 보험인 JAMSOSTEK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근로자 10인 초과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
  - 기업의 JAMSOSTEK 부담금 비율은 업종별로 상이

## &lt;JAMSOSTEK 사측 부담금&gt;

구 분	그룹1 (봉제업)	그룹2 (약기제조)	그룹3 (목재업)	그룹4 (차량조립업)	그룹5 (건설업)
산 재	0.24%	0.54%	0.89%	1.27%	1.74%
노 후	3.7%				
사 망	0.3%				

##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예측 불가능하고 높은 임금 인상 수준
  - 노사간 임금 협상 시 노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자리 인상을 요구
  -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시 지자체장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
  - 기본베이스가 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매년 예측 불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 임금인상을 제품가격 인상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생산성
  - 응답 기업 대부분이 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이 낮다고 인식
  - 높은 이직률, 짧은 근로 연한, 낮은 충성도도 애로사항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정규직 운영에 높은 비용
  -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및 해고 비용이 높아 장기 근속을 시킬수록 회사에 부담이 큼
- 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 상실
  - 지자체와 지역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통보
  - 결정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서 공장 철수 및 이전을 하고 싶어도 퇴직금 지급 부담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4. 싱가포르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직장인 평균 급여 해마다 2~3% 상승 전망
  - 싱가포르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이러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강조함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2,200	-	-	2,000	4,000	9,000
고정수당	-	-	-	-	-	-
변동수당	700	-	-	-	1,000	1,000
퇴직적립금	-	-	-	-	-	-
기 타	290	-	-	200	500	1000
합 계	3,190	-	-	2,200	5,500	11,000

자료원 : KOTRA 설문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2,000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	건설업	2,500	영상·통신	-
도소매업	-	운수업	-	기타	-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2,200		

자료원 : KOTRA 설문

### 법정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 없음

## □ 물가 및 임금 상승률

- 최근 3년간의 물가 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0.6	2.8	5.1
임금인상률	-2.6	5.6	6.6

자료원: 싱가포르통계청, 싱가포르노동청

## □ 사회보장제도

- 싱가포르 중앙연금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납입
  - 교육, 투자, 주택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현금은 정년퇴직 후 수령 가능

### <싱가포르 중앙연금기금(CPF) 부담비율>

나이구분	사측납부율 (% 월급여)	직원납부율 (% 월급여)	총 납부율 (% 월급여)
35세 이하	16	20	36
35세~45세	16	20	36
45세~50세	16	20	36
50세~55세	12	18	30
55세~60세	9	12.5	21.5
60세~65세	6.5	7.5	14
65세 이상	6.5	5	11.5

- 주 : 1. 상기부담률은 민간 부문에 해당  
 2. 월급여 \$1,500 이상인 경우에 적용  
 3. 2011년 9월 기준

##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한국대비 높은 급여 수준으로 본사와 현지직원의 급여기대치 상이
- 싱가포르 기업과 비교할 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애매함

## 5. 필리핀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임금수준은 말레이시아 보다는 낮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되나, 이들 국가에 비해 안정된 임금인상률이 강점
- 2006~20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매년 2.9% 정도로 물가상승률(5% 내외)에 못 미치는 안정세를 보임
  - 풍부한 노동력, 낮은 이직률, 완만한 임금인상률은 필리핀 투자진출의 최대 이점 중 하나
  - 베트남, 인도의 임금수준이 수년 내 필리핀 평균 급여를 넘어설 전망

### □ 법정최저임금

- 필리핀 임금제도는 지역별, 업종별(농업/비농업) 최저임금제에 기반을 두며, 최저임금은 1~2년 단위로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
  - 최저임금은 정부, 노조, 사측 대표로 참여하는 임금생산성협의회(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가 결정
- 최근 5년간 일일 법정최저임금 변화 동향

[단위 : 페소, ( )안은 US\$]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362.0	325.0	382.0	345.0	382.0	345.0	404.0	367.0	426.0	389.0
(8.4)	(7.5)	(8.9)	(8.0)	(8.9)	(8.0)	(9.4)	(8.5)	(9.9)	(9.0)

자료원 : [www.nwpc.dole.gov.ph](http://www.nwpc.dole.gov.ph)

주 : 메트로마닐라 기준

- Metro Manila(수도권) 지역, 비농업분야 일최저임금은 2011년 기준 426페소(약 11,076원)이며 마닐라 근교, 최대 공업단지인 우리기업 입주도 많은 카비테(Cavite) 지역 일최저임금은 337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 수준임
  - 최빈 지역인 필리핀 남부 Mindanao내 Region ARMM(이슬람자치

구) 일최저 임금은 222페소에 불과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함

- 최근 3년간(2009~2011)은 급격한 유가 인상 등에 따른 반발을 감안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임

#### □ 물가 및 임금 상승률

-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상승률	4.1	3.8	4.8
최저임금 인상률	0	5.8	5.4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www.nso.gov.ph](http://www.nso.gov.ph)), 고용노동부([www.nwpc.dole.gov.ph](http://www.nwpc.dole.gov.ph))

주 : 최저임금 인상률은 비농업 부문 기준

####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 사회보장시스템(SSS) 운영
  -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
  - 자영업자 포함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단 60세 이상인 직원 이거나 월 급여 1천페소 이하의 가사보조인 등은 가입의무 면제
- 월 급여의 10%를 근로자가 7%, 직원이 3% 분담
  - 월급여 14,750페소(약 38만원) 이상인 경우 월 급여의 10% 납부 (근로자 7%, 직원 3%)

## 6. 말레이시아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통과되어 올해 근로자임금이 전반적으로 50~60% 급상승 할 것으로 예측
  - 노동자 최저임금은 500~600링깃(19만~22만원) 수준이나, 법정최저임금은 800~900링깃(30만원~33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296	851	1503	691	1,528	2,810
고정수당	57	168	192	98	369	386
변동수당	187	354	587	116	232	677
퇴직적립금	34	94	201	104	197	377
기 타	34	89	159	76	208	361
<b>합 계</b>	<b>608</b>	<b>1,556</b>	<b>2,642</b>	<b>1,085</b>	<b>2,534</b>	<b>4,611</b>

자료원 : KOTRA 설문

### □ 법정 최저임금

- 아직 법안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최저임금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

###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EPF(Employees Provident Fund)가 대표적
  - 고용인은 월급여의 12%, 피고용인은 11%를 각각 부담함

###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연차별 급여수준 측정이 어렵고, 이직률과 무단 결근율이 높음

## 7. 태국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태국정부는 2012년 4. 1일부로 방콕을 포함한 태국 중부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을 40% 인상하였으며, 이의 여파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214	462	1622	813	1,000	1,880
고정수당	35	44	47	788	1,245	143
변동수당	67	78	172	64	135	175
기 타	80	105	127	82	105	430
합 계	396	689	1,968	1,747	2,485	2,628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256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	건설업	300	영상·통신	-
도소매업	800	운수업	470	기타	333
금융보험업	500	숙박음식업	-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조선기자재 Y사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200	350	500	400	500	1000
고정수당	20	30	50	20	50	100
변동수당	15	20	50	10	20	50
합 계	235	400	600	430	570	1,150

○ 자동차부품 T사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160	483	1612	322	967	1451
고정수당	32	48	9	32	9	9
변동수당	45	72	166	58	112	152
합 계	237	603	1,787	412	1,088	1,612

□ 법정최저임금

○ 최근 3년간 법정최저임금의 변화 동향

구 분	2010	2011	2012
법정최저임금	206바트	215바트	300바트 <sup>5)</sup>

자료원 : 태국 노동부

주 :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정부가 최종 결정

□ 물가 및 임금 상승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3.5	3.0	5.2
임금인상률	-	-	6.7

자료원 : 태국 통계청

○ 임금인상에 대한 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월급여의 5%씩 납부의무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5) 2012. 4. 1 태국 중부지역에 적용되었으며 2013년 전국 적용 예정

## 8. 라오스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외국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급격한 임금인상이 지속되는 추세
  - 영어가 가능한 5년 이상의 경력자 월급여는 US\$1,000에 육박
  - 2012년에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20% 인상될 예정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20	246	305	193	300	500
고정수당	-	78	116		100	200
변동수당	25	72	157	50	100	200
합 계	145	396	578	243	500	900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100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100
광업	-	건설업	175	영상·통신	-
도소매업	100	운수업	-	기타	100
금융보험업	320	숙박음식업	120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대기업 A사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75	600	-	230	600	-
고정수당	-	66	-	67	66	-
변동수당	25	96	-	-	96	-
퇴직적립금	-	50	-	19	50	-
합 계	200	812	-	316	812	-

○ 중소기업 B사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00	150	300	100	150	
고정수당	5	7	15	5	7	
변동수당	10	15	30	10	15	
퇴직적립금						
<b>합 계</b>	<b>115</b>	<b>172</b>	<b>345</b>	<b>115</b>	<b>172</b>	

□ 법정최저임금

[단위 : 라오스 킵, US\$]

2009	2010	2011	2012
569,000(약 \$74)	569,000(약 \$74)	569,000(약 \$71)	626,000(약 \$81)

□ 물가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0.0%	5.9%	8.6%

자료원 : IMF, 주 : 2010년과 2011년은 추정치

- 임금인상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 사회보장제도

-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사회보장기금 가입 의무화
  - 고용주(5%)와 근로자(4.5%)가 총 월급여의 9.5%를 납부
  - ※ 월급여가 150만킵 이상인 경우, 150만킵의 9.5%만 납부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과 신년수당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음
-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려움
-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가파른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요구

## 9. 캄보디아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외국인투자 증가, 산업생산 확대로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에 적극적임
  -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 1월 US 5달러의 실질임금 상승조치<sup>6)</sup> 발표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60	150	400	150	400	700
고정수당	20	20	20	15	20	20
변동수당	20	30	50	40	40	40
합 계	100	200	470	205	460	760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100	부동산·임대업	100	농림어업	60~90
광업	60~90	건설업	60~90	영상·통신	-
도소매업	100	운수업	100	기타	-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100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봉제공장 A사 : 고출 초임 여공의 경우 약 94달러 수령
  - ※ 기본급(\$61) + 근속수당(\$0) + 식대(\$12.5, \$0.5x25일) + 만근수당(\$5) + 초과근무(40시간, \$15[\$0.25x150%x40시간])
  - ※ 공휴일근무(초과근무수당 200%)가 포함될 경우, 월 \$100 수준
- 외국계은행 C사 : 대졸초임 약 300~400달러, 매니저 약 1,000달러

6) 동 실질임금 상승조치는 최저임금(월 US100달러 내외)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적용

## □ 법정최저임금

구 분	2009	2010	2011
법정최저임금	US\$ 56	US\$ 61	US\$ 61

- 노동법상의 최저임금은 56달러에서 변동이 없으나, 2010년 생활지원금(5달러) 지원의무화와 2012년 건강지원금(5달러) 지원의무에 따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66임

## □ 물가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0.7%	4.0%	5.5%

자료원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Update 14th, Sep 2011)

- 임금인상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 □ 사회보장제도 : 해당없음

- 산재보장/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제도는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봉제공장의 경우 사회보험 성격으로 총 급여의 0.8%를 노동부 산하기관에 의무 납부

##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높은 이직률과 회사에 대한 낮은 충성도
- 정부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

## 10. 인도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추세 지속
  - 2012년 임금인상률은 11.9%로 전망 (Aon Hewitt)
-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인 경우 임금상승률이 20~30%에 달함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94	332	734	473	969	1290
고정수당	55	139	433	257	523	1047
변동수당	8	77	222	95	181	350
퇴직적립금	2	5	11	42	100	134
기 타	20	65	75	60	165	170
<b>합 계</b>	<b>179</b>	<b>618</b>	<b>1,475</b>	<b>927</b>	<b>1,938</b>	<b>2,991</b>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제조업	100	부동산·임대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500	영상·통신	1,400
도소매업	443	운수업	400	기타	120
금융보험업	1,000	숙박음식업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대기업 A사

[단위 : US\$]

구 분	일반생산직	중견기술자	고급기술자
기 본 급	296	1,056	-
고정수당	94	304	-
퇴직적립금	31	207	-
기 타	22	80	-
<b>합 계</b>	<b>443</b>	<b>1,647</b>	<b>-</b>

○ 중견기업 B사

[단위 : US\$]

구 분	일반생산직	중견기술자	고급기술자
기본급	130	588	900
고정수당	230	1,600	2,106
퇴직적립금	-	133	600
기 타	-	133	144
합 계	360	2,454	3,750

□ 일일 법정최저임금(뉴델리 기준)

[단위 : 루피]

구 분	2009	2010	2011	
생산직	Un-Skilled	151	203	256
	Semi-Skilled	158	225	283
	Skilled	168	248	312
사무직	대학 미취학	159	225	283
	대학 졸업 예정자	169	248	321
	대학 졸업자	181	270	339

자료원 : 인도 노동부

□ 물가 및 임금 상승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13.51%	9.47%	9.39%
임금인상률	6.6%	11.7%	12.6%

자료원 : 인도 통계청, Aon Hewitt

- 임금인상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제도(EPF, Employees Provident Fund)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월급여의 각각 12%씩 총 24% 납부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두 자리수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경영환경이 악화  
-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우수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11. 방글라데시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방글라데시 임금수준은 2010년 11월, 4년만에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30%이상 상승
  - 2010년 이후 근로자 평균임금은 매년 10%가량 인상됨
    - ※ 2011년말 근로자 평균 임금은 US\$ 75 수준(1일 8시간, 기본급기준)
- 2012년 방글라데시 임금인상은 10~1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46	104	151	116	343	914
고정수당	25	43	53	59	117	135
변동수당	14	30	42	26	116	541
퇴직적립금	3	15	9	9	29	33
기 타	9	11	13	12	21	100
합 계	97	203	268	222	626	1,723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사례 1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30	60	150	80	200	400
고정수당	35	40	60	25	25	25
변동수당	3	5	13	7	17	33
퇴직적립금	3	5	13	7	17	33
기 타	10	10	15	12	12	18
합 계	81	120	251	131	271	509

○ 사례 2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55	80	160	96	200	1,000
고정수당	20	36	45	79	159	
변동수당	30	40	40		20	
퇴직적립금	3	6	8	8	30	
기 타	3	3	3	5	10	200
합 계	111	165	256	188	419	1,200

□ 법정최저임금

구 분	2009	2010	2011
법정최저임금	36.37달러	36.37달러	64.62달러

주 : 수출가공공단외 지역의 제조업 생산직 기준 평균 최저임금으로 산출

□ 물가 및 임금 상승률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물가인상률	6.6%	7.31%	9.58%
임금인상률	18.88%	10.67%	12.03%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및 관련부처

주 : 1.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기간임

2. 임금인상률은 업종별 평균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함

□ 사회보장제도 : 해당없음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 악화
- 2010년 11월 영원무역 노동소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노동쟁의 폭력화

## 12. 파키스탄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최근 물가급등으로 인해 연 10%이상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음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33	559	1,377	243	826	3,367
고정수당	185	610	2,300	133	452	515
변동수당	0	0	0	0	50	1,650
퇴직적립금	50	340	700	31	170	610
기타	50	340	355	0	300	1,060
<b>합계</b>	<b>418</b>	<b>1,849</b>	<b>4,732</b>	<b>407</b>	<b>1,798</b>	<b>7,202</b>

자료원 : KOTRA 설문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92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	건설업	115	영상·통신	-
도소매업	540	운수업	-	기타	175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		

자료원 : KOTRA 설문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대기업 A사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00	115	140	200	390	650
고정수당	23	26	28	30	62	43
변동수당	15	18	40	30	44	62
퇴직적립금	8	10	11	16	33	54
기타	34	34	34	57	57	57
<b>합계</b>	<b>180</b>	<b>203</b>	<b>253</b>	<b>333</b>	<b>586</b>	<b>866</b>

○ 중소기업 B사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본급	110	700	1,625	232	700	3,500
고정수당	-	-	-	-	230	500
변동수당	-	-	-	-	-	-
퇴직적립금	-	-	-	-	-	-
기타	5	10	20	10	20	
<b>합계</b>	<b>115</b>	<b>710</b>	<b>1,645</b>	<b>242</b>	<b>950</b>	<b>4,000</b>

□ 법정최저임금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법정최저임금	US\$ 54	US\$ 70.5	US\$ 82.3

자료원 : 파키스탄 연방정부 발표자료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기간임

□ 물가인상률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물가인상률	21%	12%	15%

자료원 : 파키스탄 경제통계부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기간임

□ 사회보장제도 : 해당없음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최근 몇 년간 가파른 물가인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짐
- 학력이나 자격증 증빙 관련 검증 어려움
- 급여수준 대비 노동 생산성이 낮음
- 임금관련 체계적인 규정이나 자료, 통계가 없음

## 13. 스리랑카

### □ 최근 임금인상 동향과 전망

- 물가급등으로 인해 연 평균 10% 이상 임금인상
  - 경기활황, 인력부족으로 2012년에도 10% 이상의 임금인상 전망

### □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US\$]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87	145	210	139	285	508
고정수당	12	17	31	54	64	107
변동수당	39	61	91	53	96	126
퇴직적립금	6	9	14	12	13	29
기 타	0	0	0	3	3	5
<b>합 계</b>	<b>144</b>	<b>232</b>	<b>346</b>	<b>261</b>	<b>461</b>	<b>775</b>

자료원 : KOTRA 설문

### □ 업종별 최저임금

[단위 : US\$]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업 종	월급여
제조업	87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
광업	-	건설업	140	영상·통신	300
도소매업	138	운수업	-	기타	324
금융보험업	-	숙박음식업	-		

자료원 : KOTRA 설문

### □ 기업별 임금지급 사례

- 중견 건설기업 A사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77	106	118	227	321	527
고정수당	8	8	8	173	203	296
변동수당	55	64	73	86	161	264
<b>합 계</b>	<b>140</b>	<b>178</b>	<b>199</b>	<b>486</b>	<b>685</b>	<b>1,087</b>

○ 중소기업 B사

구 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 생산직	중견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일반 사무직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기 본 급	81	273	636	109	455	1,364
고정수당	24	14	46	27	46	90
변동수당	82	182	273	-	-	-
합 계	187	469	955	136	501	1,454

□ 법정최저임금(월)

구 분		2009	2010	2011
생산직	미숙련	-	-	59달러~68달러
	반숙련	-	-	64달러~73달러
	숙련	-	-	68달러~86달러
비생산직	미숙련	-	-	59달러~68달러
	반숙련	-	-	68달러~73달러
	숙련	-	-	76달러~86달러

자료원 : 스리랑카 노동관련 부처

□ 물가인상률

구 분	2009	2010	2011
물가인상률	3.4%	6.9%	7.2%

자료원 : EIU

□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 월급여의 20%를 고용주가 12%, 피고용자가 8% 납부
- 근로자신탁기금(ETP, Employees' Trust Fund)
  - 월 급여의 3%를 고용주가 납부

□ 임금인상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우리 기업들은 주로 봉제업, 플랜테이션농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의 충격이 큼

## III

## 시사점

## □ 노무·인사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이번 조사결과, 아시아지역 투자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관련되어 대체로 공통된 애로사항을 토로함

**<아시아 진출기업들의 인건비 관련 공통적 애로사항>**

- 높은 물가상승에 따라 급여인상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력부족난 때문에 급여인상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음
  - 이직률이 높고, 직원들의 충성도가 낮아서 인력관리가 어려움
  -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에 전가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 고용관련 기본적인 정보확인의 어려움  
(법령, 관행, 동종업계의 인상률과 임금수준 등)
  -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증가
- 임금인상요구가 높은 이직률, 폭력적 임금시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임금인상문제는 아시아 진출기업들의 경영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
  -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채용, 인재육성, 비전제시, 복리후생, 성과측정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증가
  - 최저임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노동자 보호제도 등 진출국의 노무정책 트렌트와 업계노무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진출 대상국별 노무환경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의존도 축소

- 설비 및 장비투자, IT시스템 도입 등 전사차원의 생산성 제고 활동을 통한 노동의존도 축소가 바람직

□ 기업이미지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충성도 강화

-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부서별 정기 면담제도, 종업원 고충처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제시
  - 근무시간 외 동호회, 여가활동 지원 등 복지제도 강화
-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장기근속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충성심을 제고하고 고급인력으로 육성
- CSR 활동 등을 통해 '좋은 기업' 이미지 구축
  - 조그만 것부터라도 사회봉사 등 CSR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바람직
- 다양한 교육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근무를 통해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예방차원의 노무관리 강화

-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지의 관행이나 방식을 과감해 개선
  - 현지 노동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
  - 당국의 노무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수용
  - 무단과업에 대한 제재조항(해고, 손해배상) 사내규정에 명시
  -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망 구축 등

주:

1. 『Ⅱ. 아시아 각 국별 임금현황』에 국별로 게재된 직종별 임금현황은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직종구분은 아래와 같음
  - 1) 일반생산직은 학력 불문 초임을 의미(일반적으로 고졸초임)
  - 2) 중견기술자는 10년 이상의 경력 혹은 기술자격증 소지자
  - 3) 고급기술자는 20년 이상의 경력 혹은 기술자격증 소지자
  - 4) 일반사무직은 대졸초임으로 영어구사 가능직원
  - 5) 중간관리자는 10년 이상의 경력 혹은 과장 직무 경험자
  - 6) 고급관리자는 20년 이상의 경력 혹은 임원 직무 경험자
  
2. 『Ⅱ. 아시아 각 국별 임금현황』에 국별로 게재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실제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작성한 것이며 법적 최저임금과는 틀림

##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4
12-002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4
12-003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2012.4
12-004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2012.4
12-005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2012.4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2012.5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시장	2012.1

###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2012.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4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 ~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國投資指南	2012.1
12-008	韓國投資ガイド	2012.1
12-009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UNCTAD Training Manual on Statistics for FDI and the Operation of TNCs)	2012.2
12-010	20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4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12-012	2012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연계 세미나	2012.5
12-013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2012.4
12-014	한국투자환경설명회	2012.4
12-015	[한중수교 20주년]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2012.4
12-016	2012 글로벌 공항/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2012.4
12-01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2012.5

작성자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차장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차장
◆ 방콕무역관	박영선	차장
◆ 팔라렘푸르무역관	이종민	과장
◆ 프놈펜무역관	이형석	과장
◆ 양곤무역관	김근향	차장
◆ 다카무역관	이광일	차장
◆ 뉴델리무역관	차성욱	과장
◆ 호치민무역관	강준경	과장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과장
◆ 비엔티엔무역관	안유석	관장
◆ 카라치무역관	김한승	과장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관장
◆ 신흥시장팀	박민준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월 | 2012년 5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